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8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서영석·김한규·이성윤

민병덕 • 문진석 • 박희승

강준현 • 이건태 • 이정문

정준호 · 김기표 · 이해식

양부남 · 이연희 · 박홍배

이재관 • 서영교 • 전진숙

서미화 · 오세희 · 박균택

김남희 • 이언주 • 민형배

위성곤 의원(25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 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확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 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 조).
- 다. 첫째 자녀부터 1자녀 당 2년 이상으로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안 제19조).
- 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 마.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안 제63조의2).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수행을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당 2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을 "전부를"로 한다.

-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년을"을 "2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하되,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부담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분의 1"을 "3분의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각 호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63조의2제1호: 2025년 6월 30일

2. 제63조의2제2호: 2025년 12월 31일

3. 제63조의2제3호: 2026년 6월 30일

4. 제63조의2제4호: 2026년 12월 31일

5. 제63조의2제5호: 2027년 6월 30일

제3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지급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6 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액 을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생 략)	제3조의2(국가의 책무)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		
	<u>다.</u>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기간 추가 산입)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u>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u>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			
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	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u>로 한다.</u> <u><단서 삭제></u>		
<u>신설></u> <u>다만, 「병역법」에 따</u>			
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			
<u>지 아니한다.</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		
	입기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③ (생략)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u>후단 신설></u> <u>다만</u>,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 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수행을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 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가 산입) ① 자녀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 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을-----

-----.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삭 제> <삭 제>

서 삭제>

<u>개월 수</u> ② (생 략)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u>전부 또는 일부를</u> 부담한다.
-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산입한다. 다만, 추가로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 2. (생략)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
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	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	<u>군</u>
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	<u></u>
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u>4</u>	
전부를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	간
추가 산입) ①	
· 2년을	
<u> </u>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 저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 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 1. (생략)
-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하되,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 제
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가
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부담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세51조(기본연금액) ①
메51조(기본연금액) ①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 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 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 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 액으로 한다.

가. (생략)

-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
-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

②・③ (생략)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

가. (현행과 같음)
<u><</u> 삭 제>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 연금액) -----

제2항 • 제	4항, 기	네63조	및	제66
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역	액(부
양가족연금	금액은	제외한	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음 각
호의 구분	-에 ㄸ	나른 금	남액을	반
금액을 지	급한다	이 기	경우	빼는
금액은 노	:령연금	급액의	2분	의 1
을 초과할	수 없	다.		

1. ~ 5. (생 략)

<u>3분의 1</u>
1. ~ 5. (현행과 같음)